

#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  
발의자 : 추미애 · 박용갑 · 한병도  
박선원 · 전현희 · 이성윤  
박균택 · 신정훈 · 박지원  
박해철 · 부승찬 · 서미화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군사법원법」은 군인 및 군무원의 대부분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관할권이 군사경찰에 있지만, 내란·외환·간첩죄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할권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, 내란을 일으킨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 등을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며, 현재 운영 중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분석실의 구성원 중 다수가 군사경찰로서 내란·외환 등에 대한 수사권 없어 물리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임.

이에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, 군사경찰에 내란·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고자 함(안)

제44조 제1호).

##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호 중 “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”를 “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4조(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)</p> <p>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(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) 한다.</p> <p>1. 제43조1호에 규정된 사람:  <u>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44조(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:  <u>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 건 일체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